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23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임오경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9. 11.

다. 회 부 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배급·수입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 등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등급분류 관련 규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삭제함과 동시에,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법 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 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 규정 정비

가. 개정안 요지

-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50조).
- 음악영상물 등의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사후관리센터’를 신설함(안 제7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등급분류) ①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등급분류) ①-----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중	2. -----

의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
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
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
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신 설>

3. ~ 5. (생략)

② ~ ⑦ (생략)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
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
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
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
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단서 삭제>

2의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17조에 따라 등급분류
를 받은 음악영상물과 음악영
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
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
원업무) ① -----

-----.

1.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
물등-----

2. 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
물등-----

3. <u>제50조의4제1호</u>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u>제50조의4제3호</u>에 따른 등급 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5. ~ 7. (생략) ② (생략)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u>제50조의4제2호</u>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다. ④ (생략) 제72조(직무)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u>영상물등</u>의 등급분류 및 내용정보,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2. <u>영상물등</u>의 제작·유통 또는 시청제공의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의2. <u>제50조의4제1호</u>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 등 자체등	3. <u>제50조의4제1호</u> 및 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호 ----- 4. <u>제50조의4제3호</u>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4호----- 5.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u>제50조의4제2호</u>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3호-----.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직무) ----- 1. <u>영상물등</u> 및 <u>음악영상물등</u>----- 2. <u>영상물등</u> 및 <u>음악영상물등</u>----- 2의2. <u>제50조의4제1호</u> 및 제2호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
---	--

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5의2. 등급분류책임자 및 <u>온라인비디오물</u> 이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5의3. <u>온라인비디오물</u>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 (생략)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생략)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72조 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사후관리위원회</u>를 둔다. ③소위원회 및 <u>사후관리위원회</u>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u>률」 제17조의2제1호</u> ----- ----- ----- 3. ~ 5. (현행과 같음) 5의2. ----- <u>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u> ----- 5의3. <u>온라인비디오물 및 음악영상물등의</u> ----- 6. (현행과 같음) 제79조(소위원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사후관리센터</u>----- -----. ③----- <u>사후관리센터</u>----- ----- -----.
--	---

다. 검토사항

-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악 영상물이나 음악영상파일¹⁾도 비디오물²⁾에 해당하는바 음악영상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이를 공급하기 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함.³⁾

○ 그러나 음원 발매와 동시에 음악영상물 등을 통한 적시 홍보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등급분류 절차로 인해 홍보·유통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⁴⁾ 해외 서비스제공자와의 차별문제 및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보수적인 등급분류 등을 이유로 현행의 등급분류제도가 음악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

-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7. “음악영상파일”이라 함은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을 말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영화가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한 장소에서 청소년이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다만,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은 제외한다.
 3. ~ 5. (생략)

4) 【2021년~2025년 6월말 기준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일) 평균	처리기간 최소	처리기간 최장
2021년	1.94	1	4
2022년	2.20	1	5
2023년	2.15	1	4
2024년	2.30	1	4
2025년 9월	2.26	2	4

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2922호)에서는 일반 비디오물과 달리 음악영상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규정하면서, 음악영상물 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적절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영상물의 원활한 유통과 대중음악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됨을 전제로 할 때, 필요한 입법 정비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율 등급분류 제도의 도입은 매체의 특성과 타 콘텐츠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며, 음악영상물 등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사후관리센터’를 신설하는 방안 또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참고 1

비디오물 등급분류 운영 현황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근거

법 률 구 분		내 용
비디오물 (뮤직비디오 등)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	비디오물 등급분류 근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	비디오물 표시의무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근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등)

- ①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해당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그 내용에 관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
- ②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의 등급분류 및 판매(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8까지·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제65조·제66조·제95조제5호 내지 제7호·제97조·제98조제1항제3호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제98조제2항제9호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비디오물"을 "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로, "온라인비디오물"을 "음악영상파일"로 본다.

비디오물 등급분류 대상 및 절차

○ (분류대상)

구 분	정 의	비 고
비디오물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전기·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	영화비디오법
온라인비디오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	
음악영상물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해당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	음악산업법
음악영상파일	음악영상물이 복제·전송·송신·수신될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되거나 전자적 기기에 수록된 것	

○ (분류방법) 등급분류 고려사항 7가지 항목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

- 고려사항: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 등급분류: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 등급분류 업무 프로세스



참고 2

타 입법례(유사 입법례)

□ 자체등급분류제도 유사 사례

법률명	주요내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영화비디오법 제50조의2 내지 50조의8)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5년</td></tr><tr><td>요건</td><td>•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한 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5년																	
	요건	• 최근 5년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																	
	준수사항	• 비디오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2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물 자체등급분류(게임산업법 제21조의2 내지 21조의11)																		
	<table><tr><th>구분</th><th>내용</th></tr><tr><td>업종</td><td>•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td></tr><tr><td>사업자 관리</td><td>지정제</td></tr><tr><td>지정기간</td><td>3년</td></tr><tr><td>요건</td><td>•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td></tr><tr><td>지정방법</td><td>•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td></tr><tr><td>준수사항</td><td>•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td></tr><tr><td>사후관리 및 제재조치</td><td>• 등급이 부적절한 게임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td></tr><tr><td>업무 적정성 평가</td><td>•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td></tr></table>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게임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구분	내용																	
	업종	• 게임제작업·배급업·제공업을 영위하는 자 •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사업자 관리	지정제																	
	지정기간	3년																	
	요건	•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자본금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 등급분류 책임자 및 전담인력을 둘 것 • 소속 직원 외 2인 이상의 자문 전문가를 둘 것 •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 및 위원회와 연계 • 게임산업법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제재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																	
	지정방법	• 자체등급분류 업무 운영 계획의 적정성 심사																	
	준수사항	•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 • 등급 및 내용정보 표시 및 통보 의무 • 의무교육 연4회 이수 • 자체등급분류 업무 관련 자료제출 요청 이행 • 위촉 전문가의 활동 보고서 제출																	
	사후관리 및 제재조치	• 등급이 부적절한 게임물에 대해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요구, 등급분류취소 등 조치 • 준수사항 위반 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업무 적정성 평가	• 매년 업무 적정성 평가 실시(1회)																		

□ 사후관리센터 유사사례

법률명	주요내용
저작권법	• 저작권정보센터 설치 근거(저작권법 제120조) - 저작권정보센터는 저작권 기술적 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정책수립 및 저작권 정보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함 제120조(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3

해외 사례

구분	국가명	내용
자율심의	캐나다 프랑스	- 음악영상물 전반에 대한 규율은 존재하지 않고, 주로 TV를 통해 방영되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규정 존재 (캐나다) 음악영상물을 '버라이어티'로 분류하고, 등급분류 면제대상으로 규정 (프랑스) 등급표시가 의무화된 매체물이 아님 ※ 다만, 각 방송사들이 청소년 보호를 고려한 자체적인 결정으로서 일정한 자율심의를 행하기도 함
민간기관	독일 네덜란드 일본	- 음악영상물 전반에 대한 규율은 두고 있으나, 규범적으로 이를 독자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영상물 또는 음반과 같이 취급 (독일) '영화자율규제기구(FSK)'에서 영화, TV드라마, 콘서트 및 오페라와 함께 음악영상물에 대해 심의 (네덜란드) '시청각 미디어 분류기구(NICAM)'에서 생방송 TV 프로그램과 뉴스를 제외한 모든 시청각 매체물을 심의 (일본) 학부모와 기관들로 구성된 일본 레코드협회 산하의 '레코드윤리심사회'가 유해음반 및 음반에 포함되어 있는 음악영상물에 대한 심의 수행
행정기관	호주	(CD나 DVD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 음악영상물은 영화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호주등급분류위원회(ACB)에서 사전심의 (TV를 통해 유통되는 경우) 방송법의 적용을 받아, 방송사의 자율심의를 거쳐야 함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 인터넷 콘텐츠 관련 법을 적용받게 되나, 현실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온라인 동영상 사이트 자율심의
	영국	(2014년 음악영상물 심의제도 구축) 1984년 제정된 법에서는 음악영상물을 등급분류에서 면제하고 있었으나, 2014년부터 영국영화등급분류위원회(BBFC)에서 사전심의 (온라인 뮤직비디오)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음악영상물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BBFC의 기준에 따라 등급분류하여 유통하는 시범운영(2014년) 및 본격 시행(2015년) * 대형 음악 유통사들이 해당되나, 인디음악 제작사 등에도 자발적인 참여 요청

□ 영상물등급위원회 의견

부처명	의견 주요내용
영상물 등급위원회	• (제도 도입 및 법 개정 취지 동의) -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하는 것은 매체 특성, 타 콘텐츠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판단 - 음악영상물 등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내에 영상물 사후관리 전담조직인 '사후관리센터'를 신설하는 것은 타당 - 다만, 음악영상물 등은 해당 플랫폼 내에서만 시청제공이 이루어지는 OTT 플랫폼과 달리, 공급과 시청제공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매체특성상 유통속도가 빠르고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고 엄격한 사후관리 조치수단이 필요함 • (음악영상물 등급분류 방식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관리 재검토) - 개정안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비디오물 등급분류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여 음악산업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살펴보면,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를 “사업자가 스스로 자체등급분류하거나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으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권한을 삭제하고 통보만 받도록 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재검토 필요함 - 자체등급분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 후 등록요건을 위반하는 부적정 사업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제재 등 조치수단이 부재하여 사업자 관리의 한계와 문제점이 예상됨 •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수단 확보 필요) 음악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한 음악영상물등을 배포, 게시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 통보토록 하여, 신속한 사후관리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보여지나, 자체등급분류의 효력은 자체등급분류 시점에서 발생하고 있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음악영상물등을 사후관리하기에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자체등급분류 효력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 결과를 통보한 이후 효력 발생 등) 마련이 필요함 • (등급조정 명령의 실효성 확보방안 재검토) - 음악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등급이 부적정한 음악영상물에 대해서는 등급조정 명령에 앞서 3일안에 시정방안을 정하여

권고하고 이후에 등급조정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속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등급조정 명령을 통해 지체없이 이행토록 조치함이 바람직함

- *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은 일반 영상물에 비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유통 및 확산 속도가 빨라 그 속성상 일단 유통된 뒤에는 사후조치가 수단이나 제재에 한계가 있어, 시정권고제도 보다는 등급조정명령을 통해 신속히 조치함이 바람직함
- 온라인비디오물(OTT) 자체등급분류에서도 등급조정, 직권재분류 등 부적정 등급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제도 없이 사업자가 지체없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온라인비디오물이 제50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새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과가 등급분류기준에 현저히 위배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의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등급을 조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한 경우 이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등급표시 방법 매체별 형평성 고려 필요)** 음악산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음악영상물등의 표시방법은 시청등급만 간략하게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음악영상물등은 홍보목적으로 제공되는 3분 내외 짧은 영상뿐만 아니라 실황영상, 연속형태로 진행되는 음악영상물 등 그 종류와 목적이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내용정보 표시를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디오물의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영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류된 등급과 내용정보(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를 함께 표시

참고 5

관련 통계

□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현황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위: 편)

구분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계
2019년	64	8	5	1	78
2020년	522	38	22	2	584
2021년	1,238	145	82	12	1,477
2022년	2,512	251	124	32	2,919
2023년	3,349	319	143	40	3,851
2024년	3,507	250	106	42	3,905
2025년 9월	2,190	200	104	39	2,533

□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처리기간 (영상물등급위원회)

(단위: 일)

구분	처리기간(일) 평균	처리기간 최소	처리기간 최장
2020년	2.02	1	15
2021년	1.94	1	4
2022년	2.20	1	5
2023년	2.15	1	4
2024년	2.30	1	4
2025년 9월	2.26	2	4